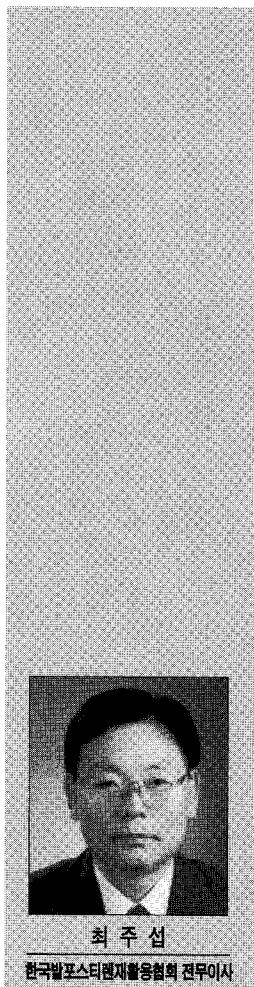




#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규제 분쟁의 현실적 해결방안



금년 7월 1일부터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여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에 대한 사용억제 대상 업종을 식품점객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과 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도시락 용기 사용규제시책의 유보 권고, 환경부의 반발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이해 당사자인 일부 도시락 업계의 반발, 이에 대한 환경 NGO의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금지 캠페인과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한 도시락의 불매운동 전개, 이에 대한 합성수지용기 생산업체들의 항의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그간 환경부의 보도자료, 언론의 보도 내용 그리고 최근 환경 전문지에 게재 된 글을 참고하면서 금후 조정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환경부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이 많은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수반하고, 상당수 백화점과 할인점 등 점포 내 식품매장에서 종이나 펌프몰드 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에서는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이 규제되어 왔음을 이유로 들어 규제 대상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다량사용하고 있는 (주)한솔도시락과 그 체인점은 우리 쌀로 즉석도시락을 만들어 외국의 거대 외식업체의 햄버거 등과 경쟁한다는 자부심, 가격과 외관과 품질에서 합성수지 용기보다 상대적으로 저급인 대체용기 사용시 도시락 제품의 소비자 외면 우려, 행정규제에 있어 유사한 용도의 같은 재질의 합성수지 용기와의 차별적 규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해 온 합성수지도시락용기 사용규제 제도를 관련업체가 교묘하게 규제를 피

해온 기업 이기주, 대체포장재 사용시 가격 인상은 이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 가격 인하 가능, 폐합성수지의 소각 또는 매립처리로 인한 2차 오염 발생 등을 지적하고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합성수지용기 사용규제 강화시책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하고 있다.

위 논쟁을 보면 정부, 업계, 시민단체 각각의 주장들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위 주요 쟁점을 분석해보자.

먼저 규제 강화의 필요성 평가라는 점에서 1995년과 2003년의 생활쓰레기 처리 여건과 폐기물관리 제도의 내용을 보자.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은 매립 비율이 52.8%에서 43.3%로 감소하였다. 그 대신에 재활용 비율은 22%에서 43.1%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3년 1월부터 도시락용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합성수지 용기가 생산자 재활용책임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재활용 의무율까지 확정 시행되고 있다. 즉 합성수지 용기에 대한 소비자의 분리배출, 지자체의 분리수거, 생산자의 재활용 체계가 갖추어진 것이다. 따라서 합성수지 용기에 대한 규제 사유가 상당히 해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도시락 용기 가격에 있어서 펠프몰드용기 제조업체들이 기존 합성수지용기와 같은 가격 또는 120% 범위 내에서 공급하겠다는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상품의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의 수요공급원칙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다. 더구나 목재펠프와 1년생 갈대펠프가 모두 국내산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 대체 용기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대체용기 가격의 보장은 외국의 펠프 수출업체의 뜻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기업의 생리상 그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도시락업계는 우리나라 쓰래기 발생 및 처리 여건상 포장쓰레기 특히 합성수지 포장재의 처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 업계의 고충을 충분히 설명하여 법 제정 전에 타협안을 찾아 환경정책에 협조함으로서 상생의 길을 찾지 못한 점이 아쉽다.

그렇다면 수년 동안 일키고 설친 난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동 시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도시락 제품 중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제품에는 대체용기를 사용하고 일반 제품에는 기존의 용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도시락용기도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품목에 포함시켜 연차적으로 대체용기의 사용비율을 증가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즉석도시락 제조판매업과 상거래 양태가 유사한 테이크아웃점과 같이 합성수지용기에 한하여 예치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법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분쟁 당사자가 모두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올라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kol